

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BEST 국공채 신종 MMF 4 호(개인가입용)

2. 시행일 : 2007. 12. 28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사유

- (1) 판매사 추가(굿모닝신한증권)
- (2) 신탁보수 인하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생략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1.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5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	<p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u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1.2</u> <u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2.8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
<p><부칙 신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 년 12 월 28 일 부터 시행한다.</p>